

6.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 : 2007년 7월 9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기획관리실장)
- 회부일자 : 2007년 7월 9일
- 상정 및 의결
 - 제1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
 -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: 2007년 7월 10일

2. 제안설명 요지

-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증원 : 20명(안 제2조)
 (“4,710명”을 “4,730명”으로)
 -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 : 19명(“3,170명”을 “3,189명”으로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증원 : 1명(“72명”을 “73명”으로)

3.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
 - “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” 준비를 위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단 신설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및 도시정비사업 기능 보장 인력 증원,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등의 업무를 추진할 인력 20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,710명에서 4,73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,
 - 집행기관의 정원을 3,170명에서 3,189명으로 19명 증원하고,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72명에서 73명으로 1명 증원하며, 직급별로 5급 1명, 6급 7명, 7급 15명, 별정6급 1명, 연구사 3명 등 27명을 증원하는 대신, 별정7급 3명, 기능10급 4명 등 7명을 감원하는 내용임.
- 주요내용으로는
 - 기획관리실은 정책개발담당관실 정책3팀의 인력 4명을 “2008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” 준비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에 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이며,
 - 기업지원분부는 농수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시장도매인제 시행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시설 기부채납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관련 절차의 이행을 위한 인력 4명을 보강하고, 자금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 실태조사 등 관련 제도의 법제화에 따른 업무 증가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였음.
 - 신기술산업분부는 단지기반 조성, 기업유치 등 산업입지 조성 기능을 담당하는 테크노폴리스추진단을 기업지원본부로 이관하고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DGIST 관련 업무는 과학기술팀으로 분장하여 재배치하였으며,
 - 자치행정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인력 2명을 증원하는 한편,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전문인력(1명)을 기능직과 상계조정하였음.
 - 문화체육관광국은 시립미술관 개관준비 인력 2명을 보강하고, 국제체육담당 인력 4명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으로 이관하였으며, 월드컵경기장 및 오페라하우스의 관리업무 조정과 공공체육시설(만촌롤러스케이팅장)의 민간위탁 시행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 5명을 감축하였으며,
 - 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단은 존속기한의 종료로 유치단을 폐지하여 단장(3급)을 비롯한 정원 21명을 감축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(단장 3급)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(14명)과 기타 현안업무 추진분야에 분산 배치하였음.
 - 보건복지여성국은 고령사회 대책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저출산 고령화대책 수립 및 의료서비스 기능보강 인력 2명을 증원하였으며,
 - 환경녹지국은 두류공원관리사무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능이 약화된 단속업무를 관리업무에 통합하여 담당인력 1명을 감축하고
 - 도시주택분부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(뉴타운)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업무 관련 팀의

신설과 새주소업무 전면 시행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해 7명의 인력을 보강하였음.

- 교통국은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민원분소 확장·개소로 인한 자동차 이전·등록업무의 증가에 대처하고 차량등록 관련 각종 전화민원 응대 및 안내기능의 강화를 위해 5명의 인력을 보강하였으며,
- 건설방재국은 지하상가 재개발 업무 마무리 등으로 업무기능이 감소한 도로관리담당 업무를 4차 순환도로건설 등 업무량이 증가하는 민자도로담당 업무로 전환하고, 건설지원 관련 업무의 기능조정 등을 통해 2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음.
- 소방본부는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(2006. 6. 30)에 따라 7개 소방서 직할 119 안전센터장 및 구조대장(14명)의 직급을 상향(소방위→소방경) 조정하였으며,
- 의회사무처는 시의원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1명을 증원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이번 정원조례 개정안은 “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” 준비 지원 및 “2008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” 추진, 도시재정비 촉진 및 도시정비사업 기능 보강 등 시정 현안업무의 추진기능을 강화하는 한편, 법령·조례 제·개정에 따른 관련업무 추진인력 확보 및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민원분소 확장 등 시민편의시책의 추진과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등을 위한 인력 조정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합리적인 기능 재배분과 업무 조정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금년부터 조직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만큼 행정여건의 변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발굴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거나, 새로운 증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기존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증원을 억제하는 등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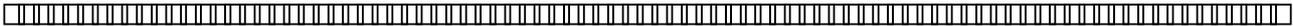
질 의	답 변
<p>○시장도매인제의 장·단점은?</p> <p>○총액인건비제 실시후 직급별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하위직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직 및 인력 운용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.</p> <p>○민선 4기 출범후 공무원 정원 증가는?</p> <p>○공무원 인력의 증가보다는 행정전산화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노력바람.</p> <p>○기록관리담당에 기록관리 전문요원인 연구사를 배치하는 이유는?</p> <p>○정부양곡 관리업무에 인력 보강이유는?</p>	<p>○장점 : 유통단계 축소로 비용절감, 거래질서 투명성 확보 등</p> <p>○단점 : 효율성 저하, 가격 불안정 등</p> <p>○직급별 인원은 정해진 비율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인력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</p> <p>○지난해 12월에 15명을 증원하고 이번 회기에 20명을 증원하려는 것임.</p> <p>○공무원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</p> <p>○관련 법률 개정으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보강임.</p> <p>○최근 농업관련 업무 및 조직을 대폭 축소한 후, 기본적인 정부양곡관련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보강임.</p>

5. 토론사항

-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전원찬성)



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7.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수정이유

- 가.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시정현안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업무의 성격, 중요도, 난이도 등에 맞게 직급을 정하며,
- 나.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에서 ‘국단위’ 한시기구로 승인(‘07. 6. 27)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(3급)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,710명을 4,730명으로 함(안 제2조 본문).
- 나. 집행기관의 정원 3,170명을 3,189명으로 함(안 제2조 제1호).
- 다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72명을 73명으로 함(안 제2조 제2호).
- 라. 본청 정원 1,379명을 1,390명으로, 의회사무처 정원 72명을 73명으로, 직속기관 정원 1,540명을 1,539명으로, 사업소 정원 1,719명을 1,728명으로 함(안 별표).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: 붙임(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, 제19조 및 제21조)
- 다. 예산조치 :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
- 라. 입법예고 : 입법예고(2007. 5. 25 ~ 5. 30, 2007. 7. 2 ~ 7. 5)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
- 마. 기 타 : 비용소요 추계서(붙임)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4,710명”을 “4,730명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1호 중 “3,170명”을 “3,189명”으로 하며, 같은조 제2호 중 “72명”을 “73명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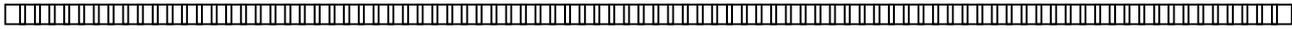
제2조(한시정원)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의 정원(집행기관) 14명(3급 1명, 4급 1명, 5급 2명, 6급 5명, 7급 4명, 기능9급 1명)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.

(별표)

대구광역시직급별지방공무원정원표(제3조관련)

직급별 \ 기관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
총 계	4,730	1,390	73	1,539	1,728
정무직계	1	1			
시 장	1	1			
일반직계	2,076	1,096	42	46	892
2-3급	1		1		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
3급	13	9		1	3
3-4급	1	1			
4급	75	45	2	4	24
5급	278	200	5	9	64
6급	640	397	15	14	214
7급	727	386	19	11	311
8급	294	58		7	229
9급	47				47
연구직계	132	4		73	55
연구관	16			14	2
연구사	116	4		59	53
지도직계	28			28	
지도관	2			2	
지도사	26			26	
별정직계	64	25	9	1	29
1급상당	1	1			
3급상당	1	1			
4급상당	8	2	5		1
5급상당	8	4	3		1
6급상당	15	11		1	3
7급상당	23	5	1		17
8급상당	8	1			7
소방공무원계	1,468	104		1,364	
소방정	10	3		7	
소방령	31	12		19	
소방경	74	6		68	
소방위	76	12		64	
소방장	212	20		192	
소방교	455	33		422	
소방사	610	18		592	
기능직계	961	160	22	27	752
6급	35	6			29
7급	95	13	2	3	77
8급	168	22	3	2	141
9급	356	70	9	5	272
10급	307	49	8	17	233



현행·개정안·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대구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4,710명</u> 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3,170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72명</u> 3. (생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----- ----- ---- <u>4,729명</u> ----- ----- 1. ----- <u>3,188명</u> 2.----- <u>73명</u> 3. (현행과 같음)	제2조(정원의 총수)----- ----- ---- <u>4,730명</u> ----- ----- 1. ----- <u>3,189명</u> 2. (개정안과 같음) 3. (개정안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[지방자치법]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[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]

제13조(정원책정의 일반기준) ①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,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

- 1.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- 2.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·난이도·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- 3.~5. (생략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시·도의 경우 : 본청, 의회사무처, 합의제행정기관, 직속기관, 출장소, 사업소
- 2. (생략)

제19조(한시정원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.

②(생략)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.

④삭제

⑤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.

⑥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⑦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
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21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 한다)
- 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소용비용 추계서

(단위:원,명)

직 급		연봉(차액)	인 원	소요비용	비 고
계			순증 20명	447,357,230	
일 반 직	소 계		순증 23명	524,895,410	
	6급 → 5급	5,262,930	1	5,262,930	
	7급 → 6급	2,024,910	8	16,199,280	
	8급 → 7급	1,905,420	23	43,824,660	
	9급 → 8급	1,431,580	23	32,926,340	
	9급	18,551,400	23	426,682,200	
별 정 직	소 계		순감 2명	△118,443,860	
	6급	52,119,970	△2	△104,239,940	
	7급	42,589,900	△1	△42,589,900	
	7급	22,311,250	1	22,311,250	
	7급 → 6급	2,024,910	3	6,074,730	
연 구 직	소 계		순증 3명	68,367,000	
	연구사	22,789,000	3	68,367,000	
소 방 직	소 계		순증 없음	61,906,320	
	소방위→소방경	4,421,880	14	61,906,320	
기 능 직	소 계		순감 4명	△89,367,640	
	10급	22,341,910	△4	△89,367,640	

※ 직급상향에 따른 연봉차액은 각 직급 기준호봉의 차액.